

LHCS 11 73 15 : 2020

비탈면 녹화

2020년 12월 9일 제정
<http://www.kosc.re.kr>



LH 전문시방서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LH 전문시방서(LHCS ; LH Construction Specification)」는 국가건설기준(KCS ; Korea Construction Specification)을 기본으로 작성한 종합적인 시방기준으로서, 단위공사 설계 시 해당 공사의 특성과 여건 등에 맞게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데 활용하기 위한 전문시방서이므로 관계법상 구속력과 계약도서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이 시방기준 발간 시점에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시방 기준으로 공사시방서 작성 시 반드시 최신 시방기준 등을 확인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시방서 제·개정 연혁

- 이 시방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LH 전문시방서와 국가건설기준(표준시방서) 간 중복·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LH 전문시방서를 중심으로 KCS 내용 및 체계에 맞게 통합 정비하여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전문시방서	주요내용	제정 또는 개정 (년.월)
LH 전문시방서	• LH 전문시방서 제정	제정 (2012.6)
LHCS 11 73 15 : 2020	• 국가건설기준 코드체계화에 따른 통합 정비 제정	제정 (2020.12)

제 정 : 2020년 12월 9일

개 정 :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관련단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작성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관련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1
1.5 운반, 보관, 취급	2
1.6 환경요구사항	2
1.7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2
2. 자재	2
2.1 재료	2
2.2 장비	6
2.3 자재품질	6
3. 시공	7
3.1 시공조건 확인	7
3.2 시공기준	7
3.3 시공허용오차	9
3.4 현장품질관리	9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깎기 및 쌓기 등에 의한 건설공사 비탈면이나 침식 등에 의한 자연비탈면에 대하여 인공재료나 식물재료를 이용하여 지표면의 안정과 식물군락의 조성 및 경관보전을 도모하기 위한 비탈면의 녹화공사 일반에 적용한다.
- (2) KCS 11 73 15(1.1(2),(3),(4))를 따른다.

1.2 관련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1) 관련 기준은 KCS 11 73 15(1.2.1)을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 LHCS 10 10 05 01 공사 일반
 - LHCS 10 10 10 05 제출물 관리
 - LHCS 10 30 05 시공측량 및 기준틀
 - LHCS 21 20 15 환경관리시설
 - LHCS 11 20 10 땅깎기(절토)
 - LHCS 11 20 15 터파기
 - LHCS 11 20 20 흙쌓기(성토)
 - LHCS 34 40 10 수목식재
 - LHCS 34 40 26 지피 및 초화류
 - LHCS 34 70 30 비탈면 녹화 및 복원

1.3 용어의 정의

- 발아율 : 발아립수(粒數) 또는 발아가능립수의 총립수에 대한 백분율
- 비탈면보호 식재공 : 다양한 식물재료와 부재료를 가지고 비탈면을 식생피복시켜 비탈면을 보호하는 시공법
- 수분 : 105℃ 건조법 또는 자외선 측정법에 의한 수분함량
- 순량률 : 육안으로 보이는 이물(異物), 다른 종자, 병충해 씨앗, 기 발아 씨앗, 파손 씨앗, 미성숙 씨앗을 제외한 순정종자(純正種子)의 총중량에 대한 백분율

1.4 제출물

1.4.1 제출물 일반사항

-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를 따라 제출한다.

1.4.1.1 제품자료

(1) 종자 뽑어붙이기의 제품자료

① 잔디종자

가. 종자의 원산지 증명, 종자의 종류, g 당 종자 입수, 발아율, 순량률의 제반사항과 생산업체의 종자 생산현황, 기술자료, 계절별 시공지침서, 시공 후 발아율 및 활착율, 시공실적 등

나. 수입종자는 원산지 수출업체 및 수입업체가 분석한 품질보증서를 첨부하여야 함

② 화이버, 접착제, 색소, 양생제 등 제품의 재질, 성분, 치수, 중량, 특성 등 제반사항과 자재생산현황, 기술자료, 시공지침서 등

1.4.1.2 시공계획서

(1) LHCS 10 10 05 01(1.19)에 명시된 내용에 포함하여 작성 제출한다.

가. 세굴 및 퇴사방지 계획서

나. 종자배합 계획서

다. 설계검토 보고서

(가) 설계도서와 현장조건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대책공법을 검토 후 각 항목별로 등록된 전문기술자가 작성한 설계도 및 계산서를 제출하되, 설계도에는 재료의 규격, 형태, 소요공사비, 시공순서, 시공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1.4.1.3 시공상세도면

(1) 식재(또는 설치, 파종) 방법 및 순서도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1.5 운반, 보관, 취급**1.5.1 자재의 보관**

(1) KCS 11 73 15(1.4.1)을 따른다.

1.6 환경요구사항

(1) 종자의 특성, 공사기간 및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파종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2) 강우 시 또는 명시된 온도 이하 또는 이상에서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한 경우가 아니면 공사를 착수해서는 안 된다.

1.7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1) 수급인은 도수로, 측구, 수목 및 잔디 식재작업 등과 비탈면보호 작업이 서로 지장을 주지 않도록 LHCS 10 10 05 01을 따라 공사 착수 전에 조정한다.

2. 자재**2.1 재료**

2.1.1 도입식물의 선정

(1) KCS 11 73 15(2.1.1)을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일반사항

- ① 공법별 적용식물은 녹화복원 목표에 적합하여야하며, 종자는 향토 초화류(쑥, 낭아초, 안고초, 비수리, 조지아 자포니카 등)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외래종자와 재래종자를 함께 사용할 경우에는 적정 비율로 혼합하되 서로 경합하거나 피압되지 않는 종자배합이어야 하며, 외래종자의 선택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2.1.2 공통재료

2.1.2.1 물

(1) KCS 11 73 15(2.1.21)을 따른다.

2.1.2.2 비료

(1) KCS 11 73 15(2.1.7)을 따른다.

2.1.2.3 생육기반재

(1) KCS 11 73 15(2.1.8)을 따른다.

2.1.2.4 식생기반재

(1) KCS 11 73 15(2.1.9)를 따른다.

2.1.2.5 덮기(덮침)재

(1) KCS 11 73 15(2.1.14)를 따른다.

2.1.2.6 농약

(1) KCS 11 73 15(2.1.10)을 따른다.

2.1.2.7 살충제

(1) KCS 11 73 15(2.1.11)을 따른다.

2.1.2.8 각종 자재

(1) KCS 11 73 15(2.1.16)을 따른다.

2.1.2.9 기타재료

(1) KCS 11 73 15(2.1.22)를 따른다.

2.1.3 식재용 식물

(1) KCS 11 73 15(2.1.2)를 따른다.

2.1.4 지피류 및 초화류

(1) KCS 11 73 15(2.1.3)을 따른다.

2.1.5 잔디

(1) LHCS 34 40 26(2.1.1)을 따른다.

2.1.6 종자 뽑어붙이기 재료

2.1.6.1 도입잔디

- (1) 도입잔디 원산지 수출업체 및 수입업체가 분석한 품질 보증서가 있어야 한다.
- (2) 도입잔디 품질보증서 확인은 국내 공인기관에 의해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내용연수 : 종자는 전년도 채취종자이어야 하며 2년 이내에 채취한 것 중에서 발아율이 규정치 이상일 경우 그 종자를 사용할 수 있다.
 - ② 발아율 : 80 % 이상
 - ③ 순량률 : 98 % 이상
 - ④ 선택 : 종자 고유의 색깔 및 광택을 지녀야 한다.

2.1.6.2 자생잔디(zoysia계, poa계)

- (1) 발아율 : 65 % 이상
- (2) 순량률 : 98 % 이상
- (3) 내용연수 : 종자는 전년도 채취종자이어야 하며 2년 이내에 채취한 것 중에서 발아율이 규정치 이상일 경우 그 종자를 사용할 수 있다.
- (4) 선택 : 종자의 고유한 색상 및 광택을 지녀야 함.

2.1.6.3 초분류 종자 중 재래초종

(1) KCS 11 73 15(2.1.5)를 따른다.

2.1.6.4 목분류 종자

(1) KCS 11 73 15(2.1.6)를 따른다.

2.1.6.5 양생제

- (1) 피복, 보습, 보비력을 갖추고 식물성 펄프로서 유기물에 오염되지 않은 자재이어야 한다.
- ① 화이버(fiber)류는 turf fiber, green fiber, glass fiber, 수피섬유, 광물질 섬유, 등으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한 제품이어야 한다.
 - ② 망류(nets)는 mulch net, erosion net, 철망 등으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한 제품이어야 한다.
 - ③ 매트류(mats)는 soil saver, 거적 등으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한 제품이어야 한다.
 - ④ 시트류(sheets)는 비닐, 종이 등으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한 제품이어야 한다.

- ⑤ 벚짚류 기타는 짚재, 톱밥 등에 소량의 아스팔트 유제를 혼입하여 특수한 피복으로 살포한 것으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한 제품이어야 한다.
- ⑥ 피막형성 보양제는 아스팔트 유제, 석유수지계, 라버계 등을 사용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한 제품이어야 한다.

2.1.6.6 색소

- (1) 색소로는 마그네슘(Mg) 등을 사용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한 제품이어야 한다.

2.1.6.7 전착제

- (1) 피복양생제를 결집시키고 종자발아에 해가 없어야 한다. 전착제로는 CMC계(carboxy methyl cellulose), PVA계(polyvinyl alcohol), 등을 사용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한 제품이어야 한다.

2.1.7 식생 및 그물망.카페트

2.1.7.1 그물망

- (1) 그물망은 부착그물망, 벚짚 등으로 제작하되 폭 0.5 m 이상, 길이 10 m 이상이어야 한다.

2.1.7.2 카페트

- (1) 야자껍질, 펄프 또는 벚짚을 여러 겹으로 누벼 제작하되 폭 0.5 m 이상, 길이 10 m 이상이어야 한다.

2.1.7.3 고정끈 및 앵커핀

- (1) 고정끈은 그물망, 카페트와 동일한 재질을 사용하거나 자연친화적인 재질을 사용한다.
- (2) 앵커핀은 나무못, 대나무못, 기성 앵커핀, 부식성 플라스틱이나 강철핀을 길이 250 mm 이상으로 자르고 헤어핀 형태로 굽혀야 한다.

2.1.7.4 침식방지망

- (1) KCS 11 73 15(2.1.17)을 따른다.

2.1.8 암절개면 보호식재

2.1.8.1 철망

- (1) 철망은 KS D 3552의 적합한 소선에 경질 염화비닐을 피복한 철망을 사용한다.

2.1.8.2 혼합제 및 씨앗

- (1) 혼합종자, 전착제, 식생기반재(특수배양토 등)와 물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씨앗은 토질 및 기후조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2.1.8.3 낙석방지망

- (1) KCS 11 73 15(2.1.19)를 따른다.

2.1.9 차폐수벽공사용 수목

(1) KCS 11 73 15(2.1.12)를 따른다.

2.1.10 식생혈공사

(1) KCS 11 73 15(2.1.13)을 따른다.

2.1.11 식생상

(1) KCS 11 73 15(2.1.15)를 따른다.

2.1.12 격자틀 및 블록제품

(1) KCS 11 73 15(2.1.18)을 따른다.

2.1.13 새집붙이기 재료

(1) KCS 11 73 15(2.1.20)을 따른다.

2.2 장비**2.2.1 장비**

(1) 비탈면보호에 동원되는 장비는 시공 계획서에 적합해야 한다.

2.2.2 종자뽑어붙이기 장비

(1) 혼합기

① 혼합재를 뽑어내는 파종기로 교반장치를 내장하고 재료를 교반, 부유시켜 균일하게 슬러리를 혼합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이라야 한다.

(2) 배송관

① 배송관은 막히지 않고 지면에 슬러리를 균등하게 살포할 수 있는 치수를 가진 것이라야 한다.

(3) 슬러리 탱크

① 용량이 4,000 l 이상이고 낭비 없이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고 씨뿌리기할 구역에 접근할 수 있도록 살포노즐을 갖추고 이동식 기계장치에 탑재한 것이라야 한다.

2.3 자재품질**2.3.1 종자검사**

(1) 종자를 무작위로 시료를 추출하여 공인연구기관에 종자감정(발아시험 등)을 의뢰하여, 검사요구 기준에 합격해야 한다.

(2) 시료를 채취한 종자에 대하여는 검사가 끝날 때까지 봉인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시공 전 검토사항

- (1) KCS 11 73 15(3.1.1)을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 (2) 공사를 시작하기 전 LHCS 10 30 05를 따라 측량기준점 및 시공기면, 규준틀이 명시된 것과 같은지 확인해야 한다.
- (3)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확인해야 한다.

3.2 시공기준

3.2.1 시공일반

- (1) KCS 11 73 15(3.2.1)을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 (2) 비탈면 보호공의 시공시기는 계획비탈면 형성 후 가급적 조기에 시공하되, 기후조건을 고려한 초·목분류의 식생 특성 및 우기철이 도래하기 전 충분한 활착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3) 비탈면 보호공의 식생은 시공 전 시험시공을 시행하여 분석하고 해당지역에 가장 적합한 식생공을 선택하여야 한다.

3.2.2 시공적기 및 부적기

- (1) KCS 11 73 15(3.2.2)를 따른다.

3.2.3 생육기반 조성

- (1) 면정리 및 고르기
 - ① KCS 11 73 15(3.2.3(1))을 따른다.
- (2) 비탈면 배수공사
 - ① KCS 11 73 15(3.2.3(2))을 따른다.
- (3) 비탈면녹화 기초
 - ① KCS 11 73 15(3.2.3(3))을 따른다.
- (4) 표면수 및 용수의 처리
 - ① 표면수 또는 용수에 의하여 비탈면이 세굴 또는 유출되어 붕괴의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배수시설을 도면에 명시된 대로 처리하거나 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3.2.4 잔디식재

- (1) 잔디식재는 LHCS 34 40 26을 따라 잔디를 식재한다.

3.2.5 종자뽑어붙임공

3.2.5.1 시공조건 확인

- (1) 수급인은 씨뿌리기할 비탈면의 표면은 지름이 35 mm보다 큰 돌, 잡초, 부스러기, 기타 이질 재료가 없게 청소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 (2) 마무리 표면이 계획면에서 ± 25 mm 이내인지를 확인하고 변동이 크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보고 하여야 한다.
- (3) 표토가 종자 슬러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식재에 적합한 상태인지 확인해야 한다.

3.2.5.2 준비

- (1) 흙이 식재에 적합한 함수량을 갖도록 필요시 살수를 해야 한다.

3.2.5.3 슬러리 혼합

- (1) 슬러리는 현장에서 조제해야 한다.
- (2) 종자가 슬러리 상태로 30 분 이상 있게 해서는 안 된다.

3.2.5.4 뿔어붙이기

- (1) 슬러리 혼합물은 명시된 속도로 균일하게 살포해야 하며, 종자뿌리기는 지정된 구역 내에 한정하고 다른 식생물에 닿지 않게 해야 한다.
- (2) 혼합 후 4 시간 내에 살포하지 못한 슬러리 혼합물은 폐기하고 현장에서 즉시 제거해야 한다.

3.2.5.5 청소 및 보호

- (1) 다른 식생물, 식재구역 및 포장구역에 살포된 슬러리는 씻어내야 한다.
- (2) 종자뿌리기한 구역 위에 장비를 운행해서는 아니 된다.

3.2.5.6 종자뿌리기의 숙성기간

- (1) 종자뿌리기 숙성기간은 최초의 종자뿌리기가 완료되고 검수된 직후부터 30 일로 본다.
- (2) 숙성기간 중 종자뿌리기 할 구역이 적합한 식생이 되도록 하고, 종자뿌리기를 충분히 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서면지시를 받고 24 시간 내에 그 구역을 다시 일구어 종자뿌리기를 다시 해야 한다. 이 경우, 종자뿌리기가 명시된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숙성기간은 계속된다.
- (3) 숙성기간은 물주기, 잡초 숙아내기, 시비, 살수, 해충방제 및 적절한 성장에 요구되는 정상적인 작업을 포함한다.

3.2.6 식생 및 그물망.카페트

- (1) 그물망 또는 카페트 깔기는 비탈면 상단부에서 하부로 깔아야 한다.
- (2) 앵커핀의 표준설치 간격은 1 m에 1 개소로 하여 기초지반에 고정시켜야 한다.
- (3) 그물망 또는 카페트는 비탈면에 대하여 수직방향으로 붙이고 5 cm 정도 겹쳐서 깔아야 한다.
- (4) 그물망 또는 카페트는 붕락을 막기 위하여 고정끈, 앵커핀 등으로 고정하여야 하며, 앵커핀의 고정깊이는 250 mm 이상으로 한다.
- (5) 그물망 또는 카페트를 설치한 후에는 충분히 물을 주어 고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뒷거름을 주어야 한다.

- (6) 시공 후 1 개월 이내에 발아가 되지 않거나, 전면에 고르게 발아되지 않고 일부만 되었을 때에는 재시공한다.

3.2.7 암 깎기 비탈면 보호식재

- (1) 수급인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암깎기 비탈면에 식생재료를 뽑어 붙여 비탈면의 표면보호 및 녹화를 하여야 한다.
- (2) 수급인은 특수 식생재료 선정과정, 사용재료, 시공상세도, 시공법 등이 포함되어 있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 수급인은 암깎기가 완료된 상태에서 앵커핀, 철망, 철선, 착지핀, 결속 등 작업을 견고히 한 후 식생 혹은 녹생토를 취부하여 낙석 혹은 침식 및 유실을 방지하여야 한다.
- (4) 식생종자는 수입 양잔디등 씨앗과 한국산 초목 분류를 혼합하여 파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지역 및 계절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5) 녹생 혹은 식생토를 취부 할 때는 내부에 공극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취부 최소두께는 설계두께의 80 % 이상이어야 하고 설계두께 이상 되는 면적이 90 % 이상이어야 한다.
- (6) 비가 계속해서 내릴 경우 비탈면에 종방향 배수로를 설치하여 빗물에 의하여 비탈면이 씻겨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 (7) 작업장의 비탈면이므로 강우, 강풍 등 작업조건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 한다.
- (8) 작업원의 개인보호구 적정성 등을 감안하여 안전작업이 되도록 조치한다.
- (9) 보호식재 표면적 매 100 m² 마다 1 개소를 지정하여 검측하고, 총 검측 개소에 대한 평균값이 기준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3.2.8 비탈면 녹화

- (1) KCS 11 73 15(3.2.4)를 따른다.

3.3 시공허용오차

- (1) 비탈면보호의 시공허용오차는 마무리된 표면에서 ±50 mm 이내로 시행해야 한다.

3.4 현장품질관리

3.4.1 비탈면의 유지관리

- (1) 적용범위
 - ① KCS 11 73 15(3.3.1(1))을 따른다.
- (2) 재료일반
 - ① KCS 11 73 15(3.3.1(2))를 따른다.
- (3) 시공일반
 - ① KCS 11 73 15(3.3.1(3))을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 ② 검사결과 공사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③ 잔디의 착근기간은 30 일로 하고, 이 기간 내에 건강한 성장을 보이지 않는 잔디는 공사 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대체해야 한다.

집필위원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서영호	한국토지주택공사	박준호	(주)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정영수	한국토지주택공사	서병제	(주)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자문위원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권영진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선욱	한국토지주택공사
김영민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종수	한국토지주택공사
남종혁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학식	한국토지주택공사
박찬교	한국토지주택공사	정우식	한국토지주택공사
방성윤	한국토지주택공사	최인석	한국토지주택공사
이기필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이영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충기	서울대학교
구재동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기석	(주)희송지오택
김기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동민	(주)한국종합기술
김나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범주	동국대학교
김태송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성원	(주)유신
김희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종호	평화지오택(주)
류상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여규권	(주)삼부토건
소병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오정호	한국교통대학교
원훈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규환	건양대학교
이승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선복	(주)동부건설
이용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용규	경성대학교
이용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재희	(주)이산
주영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하익수	경남대학교
최봉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허원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곽기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윤석덕	한국도로공사
권석현	(주)디엠씨엠	이수빈	고려개발(주)
김동규	한국수자원공사	황인준	한국도로공사
문준식	경북대학교		

소관부처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정우진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문영훈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분야별 가나다순)

LHCS 11 73 15 : 2020 비탈면녹화

2020년 12월 9일 발행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관련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52852) 경상남도 진주시 총의로 19(총무공동)
☎ 1600-1004(대표)
<https://www.lh.or.kr/>

작성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52852) 경상남도 진주시 총의로 19(총무공동)
☎ 1600-1004(대표)
<https://www.lh.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 031-910-0444
<http://www.kcsc.re.kr>